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3가합543321-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 종결 2015. 3. 31.

판결 선고 2015. 4.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A은 소외 E, F, G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6,073,531원 및 그 중 686,779,539원에 대하여는 2012. 12. 24.부터, 188,688,794원에 대하여는 2013. 1. 18.부터, 385,717,422원에 대하여는 2013. 2. 6.부터, 356,124,934원에 대하여는 2013. 2.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소외 E와 피고 B 사이의 2012. 9.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② 피고 B는 소외 E에게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2. 9. 20. 접수 제380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③ 소외 G와 피고 C, D 사이의 2012. 9.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 D는 소외 G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2. 10. 2. 접수 제691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보증일자'란 기재 일자에 '채권기관'란 기재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소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과목' 기재 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의 상환채무를 '보증금액'란 금액을 한도로 '보증기한'란 기재 기한 동안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분리 선고전 공동피고 E, F, G는 H의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위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1차보증	2008. 11. 5.	400,000,000	2009. 11. 4. (2012. 11. 2.)	우리은행	세이프e-구매카드대출
2차보증	2009. 2. 18.	494,000,000	2010. 2. 17. (2013. 2. 15.)	우리은행	할인어음대출
3차보증	2009. 6. 26.	80,000,000	2010. 6. 25. (2013. 6. 21.)	하나은행	할인어음대출
4차보증	2012. 4. 4.	255,000,000	2013. 4. 3.	중소기업은행	할인어음대출
5차보증	2012. 6. 20.	800,000,000	2013. 6. 19.	하나은행	B2B구매자금대출
6차보증	2012. 9. 21.,	400,000,000	2013. 9. 17.	(주) 동양에스텍	담보어음보증
7차보증	2012. 9. 21.	200,000,000	2013. 9. 17.	기보스틸(주)	담보어음보증

나. H은 2012. 11. 19. 당좌부도가 발생하여 위 대출과목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2012. 12. 3.부터 2013. 2. 20.까지 위 채권기관인 우리은행 등에
합계 2,361,460,41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2. 12. 4.부터 2013. 8. 14.까지 H와 E, F, G로부터
합계 744,149,726원을 회수하였다.

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H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E, F, G를 상대로 분리 선고전 이
사건으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4. 4. 8. E, F, G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6,073,531원(잔존 대위변제금 1,617,310,689원 + 확정손해금 8,762,8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 B는 2012. 9. 5. 분리 선고전 공동피고 E와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C, D는 2012.
9. 8. 분리 선고전 공동피고 G와 별지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이 사건 1매매계약 당시에, G는 이 사건
2매매계약 당시에 각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H이 기존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이용하였는바, 이는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도 원고에 대한 H의 기존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E은 피고 회사의 단순한 주주였을 뿐 H과 피고 회사는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격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등 참조).

갑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H의 주된 영업목적이 철재제조 및 판매업 등이고 피고 회사의 주된 영업목적이 철강재 도소매업, 철강 제조업(2012. 9. 13. 추가되었다) 등으로 일부 동일한 사실, ② H은 1988. 2. 3. 본점을 '서울 금천구 I 단지 19동 2호'로 하여 설립되었고, 피고 회사는 2006. 4. 19. 본점을 위 H 본점과 인접한 '서울 금천구 J상가 7-325'로 설립된 점, ③ E은 1999. 3. 30.부터 H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3. 21. 감사를 퇴임하고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H이 2012. 11. 19. 당좌부도가 발생하자 그 다음날 이 법원에 위 회사의 파산신청을 하여 2012. 12. 7. 이 법원 2012하합161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④ E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9. 3. 27. 사외이사로 취임하였고, 2012. 3. 27. 사외이사를 퇴임하고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11. 19.(위 당좌부도 발생일이다) 사내이사를 퇴임하였는데, 당일1)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K(2012. 11. 19. 이후로 '1인이사'로 변경되었다)에게 피고 회사 주식 2,600주를 양도한 사실, ⑤ 피고 회사에 E의 아들인 L, M이 근무하고 있고, H에서 자금담당업무를 수행하던 N이 피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두 회사의 인적구성이 일부 동일한 사실, ⑥ 피고 회사가 현재 H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O'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 ⑦ 피고 회사의 매출이 H의 당좌부도 이후 증가하고 있고, 피고 회사의 거래처와 H의 거래처가 일부 중복되는 사실, ⑧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어음보험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K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L이 발급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K이 철강 관련 사업과 관련된 경력이 없거나 E과 친밀한 관계로 E과 동거 중인 사실은 위 인정사실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와 H의 주된 영업목적, 인적구성이 일부 동일한 점 등이 인정되나, E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K과의 관계를 알 수 없는 점, 위 인정사실만으로 E이 H이나 피고 회사를 사실상 혼자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H에서 피고 회사로 직접 이전된 자산이 있는지 불분명한 점(거래처를 비롯한 영업권이 아무런 대가 없이 H으로부터 피고 회사로 이전되었다거나, 그 밖에 H의 자산이 피고 회사의 설립비용 등의 자금으로 유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E이 사실상 동일한 H과 피고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거나, 피고 회사가 H의 채무면탈을 위해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H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E에 대한 1,626,073,531원 상당의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1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그 피보전채권이 된다(이 사건 1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1매매계약 당시 위 연대보증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있었고, 이 사건 1매매계약 체결 무렵 H의 경영이 악화되어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 파산신청을 하기 이르렀으므로 E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이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실제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아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E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1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E의 사해의사를 추인할 수 있으며 그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B의 선의 항변

피고 B는 E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이 사건

1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 이 사건 1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 B가 E으로부터 이 사건 1부동산을 일반적이 시세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매수한 사정이 인정되나, 갑 제13호증, 을마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는 E과 친인척 또는 친분 있는 관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1매매계약 이전에는 거래관계가 전혀 없었던 점, ② E은 2008. 3.경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인천 부평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P에게 매도를 의뢰하였고, P은 2011.경 이 사건 1부동산의 인근에 있는 Q의 부동산 매매 중개 과정에서 알게 된 피고 B에게 매수를 제의하여 이 사건 1매매계약이 이루어졌으며, 피고 B는 P에게 그 중개수수료로 2,2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③ 피고 B는 이 사건 1부동산을 25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계약 당일 계약금 25,000,000원을 E의 계좌에 입금하고, 9. 20. 75,0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50,000,000원은 E이 이 사건 1부동산을 담보로 웅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모두 지급한 점, ④ 이 사건 1부동산이 섬에 위치하여 수요가 극히 제한적일 것이고 더욱이 맹지임을 고려하면 그 매매대금이 공시지가에 비하여 염가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시세보다 부당히 저렴하게 매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P은 이 사건 1부동산이 장기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1.경 공시지가의 60% 수준에 매각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공지하기도 한 점, ⑥ 피고 B는 이 사건 1부동산 매입 이후 펜션으로 개발하고자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공로를 개설하고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 점, ⑦ 이

사건 1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1부동산의 등기부에 웅진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외에는 압류 내지 가압류의 기입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진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P의 권유에 따라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1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나아가 피고 B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이 사건 1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1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1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G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H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G에 대한 1,626,073,531원 상당의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2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그 피보전채권이 된다(이 사건 2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2매매계약 당시 위 연대보증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있었고, 이 사건 2매매계약 체결 무렵 H의 경영이 악화되어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 파산신청을 하기 이르렀으므로 G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이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실제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아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G가 피고 C, D에게 이 사건 2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G의 사해의사를 추인할 수 있으며 그 수익자인 피고 C, D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C, D의 선의 항변

피고 C, D는 E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노후대책 목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이 사건 2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 이 사건 2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2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가 2번 작성된 점, 위 피고들이 G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일부 수표가 부동산 중개인인 R에 의하여 현금으로 환전된 점, R이 중개면허증이 없고, 이 사건 2매매계약을 중개해주고 받은 중개비가 통상적인 중개비보다 매우 적은 점 등이 인정되나, 갑 제14호증, 을바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법무사 S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관악농협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증인 R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 D는 G와 친인척 또는 친분 있는 관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2매매계약 이전에는 거래관계가 전혀 없었던 점, ② 위 피고들은 2012. 8.경 평소 친분이 있던 R으로부터 매수를 제의받고 이 사건 1부동산을 매수한 점, ③ 위 피고들은 이 사건 2부동산을 1,55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계약 당일인 2012. 9. 8. 계약금 40,000,000원을 G의 계좌에 입금하고, 2012. 9. 10. 법무사 S의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G에게 나머지 계약금 4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2012. 9. 21. G에게 중도금 220,000,000원을 현금과 수표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1,250,000,000원은 피고 C 소유의 광명시 T 임야 2,814㎡와 이 사건 2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한 점, ④ 위 피고들이 이 사건 2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시세보다 부당히 저렴하게 매수한 것이라 볼 사정이 없고, 매매대금 지급시기 등 거래조건이 이례적이라고 볼 사정도 없는 점, ⑤ 이 사건 2부동산은 원룸 건물로 위 피고들이 노후대책으로 구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⑥ 이 사건 2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2부동산에는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을 뿐, 그 외 다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압류 등의 집행이 없어 위 피고들로서는 채무자인 G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점, ⑦ 원고는 사해행위를 이유로 위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가압류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단4139호)을 받아 2013. 5. 20. 이 사건 2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다가 2013. 8. 9. 해제해 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 D가 노후대책 목적으로 이 사건 2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나아가 피고 C, D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이 사건 2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2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2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 D의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성대

판사김현곤

판사노미정

별지

1) 올라 제2호증에는 주식양도계약이 2012. 11. 9. 체결된 것으로 되어있다.